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나20209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나202091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가단523443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임윤정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남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혁

변론 종결2024. 8. 7.

판결 선고2024. 12. 18.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가단5234433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593,8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593,8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9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를 "제1심판결의 별지 기재 '보험금 산정결과에 따른 지급요청서'(이하 이 사건 지급요청서라 한다)의 내용과 같이"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요청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요청서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급요청서의 앞부분에 '상기 본인은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로 아래와 같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 보험금 지급요청은 피고의 자발적인 의사로 원고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고,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의

요청사항에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요청사항 아래에는 '상기 수익자 본인 피고 위의 요청사항은 원고 보상담당자로부터 이건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확인 및 동의하여 본인이 작성한 것이며, 향후 이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책임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원고 귀중'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급요청서에는 보험금 지급요청과 관련하여 피고가 향후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향후 어떠한 이익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지급요청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지급요청서에는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으며 그 아래에 '원고 귀중'이라고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 1)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가 후유장해에 해당되어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에게 보험금 450,593,844원을 지급하였다.
- 2) 그러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13635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서 위 법원 2021가단128699호로 손해배상(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가 후유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3) 따라서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기록, 소견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보험료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 10호증, 을 제3, 4, 5, 7,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련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신체감정촉탁이 이루어졌는데, 2021. 11. 23.자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수 손상에 의한 사지 불완전 마비 증상이 남아 있고, 척수 손상은 중추 신경계 손상이므로 영구장해이며, 노동능력상실률은 43.5%라고 되어 있으나, 2022. 9. 1.자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척추질환의 진단은 '경추부 척수 손상 후 회복된 상태, 경추부 염좌'이고, 이 사건 사고 후 '경부통, 경미한 사지 부전 마비' 등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추가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사료되고,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피고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한 장애 항목은 없다고 되어 있는 점, ② 관련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촉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D병원 재활의학과 담당 전문의가 작성한 2017. 5. 24.자 후유장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라 한다)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수 손상, 우측 발목 및 발가락 관절강직, 좌측 발목 및 발가락 관절강직 등의 장애가 있는데, 이는 척수 손상의 후유증인 마비와 경직으로 유발된 발목, 발가락의 관절구축으로 인한 것으로 영구장해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 점, ③ 척수 손상은 운동유발전위검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 2015. 9. 3. H병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운동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한 결과 정상 소견이었으나, ㉡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에는, 2017. 4. 13. D병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상지 및 하지의 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한 결과 척수 병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되어 있고, ㉢ 관련 사건에서 위 F병원장 및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당시 피고에 대한 운동유발전위검사는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며, ㉣ 관련 사건에서의 2023. 10. 5.자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는, 2023. 8. 23. F병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상지 및 하지의 운동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지 및 하지로 가는 추체로의 기능 이상으로 나왔는데, 이는 척수 손상으로 운동기능의 이상이 있다는 의미라고 되어

있고, ㉔ 관련 사건에서의 2023. 7. 4.자 G병원장의 감정보완회보촉탁서 반려에는, G병원에서는 운동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반려한다고 되어 있는 점, ㉕ 관련 사건에서의 2023. 11. 23.자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는, H병원의 2015. 8. 2.자 의무기록에 상지는 마비가 없으나 하지는 레벨 3+로 기술되어 있어 부분 마비가 있었고, 2015. 9. 18.자 의무기록에도 7. 27. 전과 당시 상지 4단계 하지 3단계의 부분 마비가 보이며, 9. 18. 퇴원시 근력에 큰 변화 없으나 최소한 보조하에 보행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H병원 퇴원시에도 부분 마비의 증상이 잔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5. 9. 3. H병원에서의 유발전위검사일로부터 2017. 4. 13. D병원의 유발전위검사일까지 사이에 심대한 손상으로 척수 손상이 발생되었다는 사고력이나 척수 손상에 대한 치료력이 없으며, H병원의 의무기록과 같이 하지의 부분 마비 증상이 잔존하였다면 피고의 척수 손상의 원인은 2015. 7.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되어 있는 점, ㉖ 위 2015. 9. 3.부터 2017. 4. 13.까지 사이에 피고가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 지급 당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가 후유장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김경란

판사강효원